

# 2026년 용인특례시 Y-Trade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공고

용인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'2026년 용인특례시 Y-Trade 수출상담회'를 개최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4월 7일  
용인시산업진흥원장

## 1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6년 용인특례시 Y-Trade 수출상담회
- 일시: 2026. 7. 15.(수) 10:00 ~ 18:00
- 장소: 소공인·스타트업 허브 1층 컨퍼런스룸(기흥구 흥덕2로 15)
- 상담품목: 종합소비재
- 모집규모: 23개사 내외
  - ※ 선정여부는 신청기업의 상담희망품목 분류 및 해외바이어와의 매칭 결과에 따라 결정
- 해외바이어: 싱가포르 소재 해외바이어 10개사 내외
- 지원내용
  - (수출상담회) 해외바이어-참가기업 간 1:1 매칭 비즈니스 상담 지원
  - (제품전시장) 참가기업 중 제품 전시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 전시장 운영
  - (설명회) 수출상담회 연계 싱가포르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
    - ※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초청 예정
  - (수출멘토링) 용인시 수출멘토 상담 지원
  - (사후지원) KOTRA 용인AI무역지원센터 및 싱가포르 무역관과 연계하여 참가기업 중 희망기업 대상 싱가포르 테스터 마케팅 지원
    - ※ 상기 계획 및 지원내용 등은 진흥원 내·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2

## 신청자격

- 지원대상: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
  -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
    - 일반 도/소매업 등은 제외(단, 기업 자체 제품이 있는 경우는 예외)
- 제외대상
  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(법인/개인)
 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
  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
  -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  - 신청기업 명의를 아닌 에이전트(대리인)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
  -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  -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
  - 기타 관련규정,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
  -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선정 취소

##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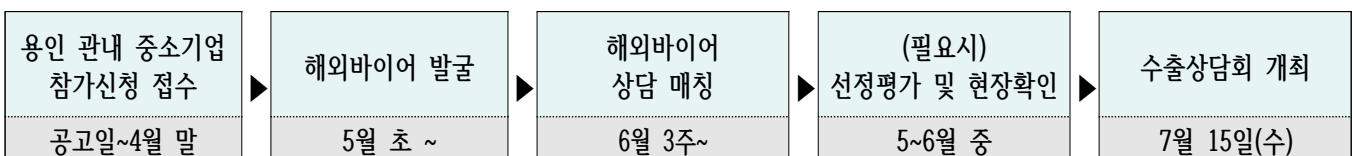
##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: 2026. 4. 7.(화) ~ 4. 30.(목) 17:00까지
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(ybs.ypa.or.kr)
  - ※ 접속이 물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,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신청하지 못 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

## 4

## 추진일정

- 추진절차 및 일정



- ※ 선정여부는 신청기업의 상담희망품목 분류 해외바이어와의 상담매칭 결과에 따라 결정
- ※ 선정평가 및 현장확인 은 필요시 진행 예정(참가기업 과다 신청 등)
- 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제출서류

번호	구분	구비서류	부수	발급처
1	필수	참가신청서 및 제품소개서 * 양식 준수	1부	진흥원 양식
2		상담품목 요약서	1부	진흥원 양식
3		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1부	진흥원 양식
4		확약서	1부	진흥원 양식
5		사업자등록증 ※ 용인에 공장만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공장등록증명서 추가 제출	1부	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6		사업자등록증명원 (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)	1부	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7		국세 납세증명서 (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)	1부	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정부24 (www.gov.kr)
8		지방세 납세증명서 (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)	1부	국세청 홈택스 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정부24 (www.gov.kr)
9		중소기업확인서 (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)	1부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 <a href="https://srinfo.mss.go.kr/">https://srinfo.mss.go.kr/</a> )
10	선택	외국어 카탈로그 등 (해당 시)	1부	-

※ 상담품목 요약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

※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할 경우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

※ 제품소개서는 주요제품 1가지만 작성하며, 주요제품을 포함한 전체 제품은 상담품목 요약서에 작성

□ 문의처

- 판로지원팀(031-323-5230, [pjh@ypa.or.kr](mailto:pjh@ypa.or.kr))

별첨 중소기업 범위(중소기업기본법) 1부.

## 중소기업기본법

[시행 2024. 8. 28.] [법률 제20362호, 2024. 2. 27., 일부개정]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4. 1. 14., 2015. 2. 3., 2016. 1. 27., 2018. 8. 14., 2019. 12. 10., 2020. 10. 20., 2020. 12. 8., 2020. 12. 29.>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    -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   -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 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  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-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4. 2. 20.>
-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